



이륜자동차 번호판 관리에 관한 미국, 싱가포르 입법례

2020-23호 (통권 제137호, 2020.9.1.)

최신 외국입법정보

발행처 국회도서관 | 발행인 현진권 | 작성자 김정임*

-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또는 그와 유사한 구조의 자동차로, 일반적으로 오토바이라 부른다.
- 이륜자동차는 1인 가구 증가 및 언택트 문화 확산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배달업계의 주요 교통수단이 되고 있다.¹⁾ 그러나 근래 들어 배달 및 소형화물 시장의 경쟁과열로 이륜자동차의 난폭운전과 미적발 위법 운행이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2).}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리 당국으로서는 현행 단속카메라가 전면 촬영으로 설정되어 있어 후면 부착 번호판 촬영이 불가하여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외국의 이륜자동차 번호판 입법례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법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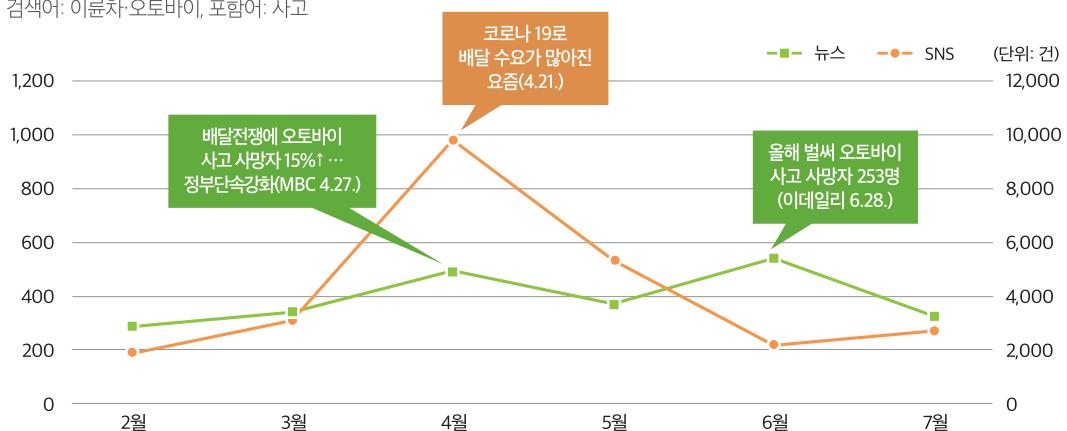
1) 기존의 사업장별 배달 형태와 더불어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퀵서비스 등의 배달전문업체 및 배달앱 서비스가 활성화되었다.

2) “배달앱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세종시 사례”, 교통신문(2020.7.28.), “다시 불붙은 이륜차 전면 번호판 논쟁”, 전자신문 (2020.7.28.), “오토바이 사고 느는데 과속단속기는 무용지물”, 서울경제(2019.10.14.).

국회도서관 Argos(bigdata.nanet.go.kr)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결과

이륜자동차 언급량 추이(2020.1.1~2020.7.31.)

검색어: 이륜차·오토바이, 포함어: 사고



시사점

- 이륜자동차는 일반 자동차와 비교할 때 구매·유지 면에서는 경제성이, 운행 면에서는 이동편의성이 뛰어난 운송수단으로 개인용, 레저용, 소형화물 운송용으로 각광 받고 있다.
- 미국 뉴욕주에서는 이륜자동차(motorcycle)를 운행할 때 소유자가 해당 이륜 자동차를 등록하고, 등록 시 발급되는 식별기호를 담은 번호판 하나를 후면에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 또한, 교통법규 위반은 교통경찰이 직접 단속하거나 단속카메라를 활용하며, 위반 자동차의 후면에서 번호판을 촬영하도록 하고 있다.
- 싱가포르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할 때 소유자가 해당 이륜자동차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자동차와 동일하게 번호판을 전면과 후면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⁴⁾ 다만 경우에 따라 반드시 정면이 아니더라도 한 방향 이상에서 구별하기 쉽게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3) 뉴욕주법상 이륜자동차(motorcycle)는 운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좌석이나 안장이 있고, 트랙터를 제외하고 지면과 접촉하는 바퀴가 3개 이하로 설계된 모든 자동차를 의미한다(『자동차교통법』제123조).

4) 싱가포르법상 이륜자동차는 바퀴가 4개 미만이고 무게가 400kg을 초과하지 않고, 도로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를 의미한다(『도로교통법』제4조제1항번호) 또한 알루미늄·크롬도금·등록기관이 승인한 기타 재료 등 해당 번호판의 소재가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다.

[사진] 싱가포르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 사례



-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러차례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에 관하여 논의한 적이 있다. 당시 주요한 의견은 전면 번호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 전면부의 다양한 구조 및 형태로 인하여 번호판을 단속카메라에 인식될 크기로 제작·부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이었다⁵⁾.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이륜자동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뉴욕주의 단속카메라 후면배치 사례 또는 싱가포르의 번호판 앞·뒤 부착 사례를 참고하여 해결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전면 번호판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이륜자동차 차종마다 전면부의 구조 및 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번호판을 사각형 외에 곡면으로 설계하거나, 앞바퀴 부근 또는 앞유리 등 전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도록 재량을 부여하는 한편, 이러한 설계 시 안전 측면에서 번호판 소재의 다양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이에 덧붙여, 일률적으로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 곤란하고, 고정되지 않은 형태의 전면 번호판은 공기저항을 유발하여 이륜자동차의 주행안정성을 저해하며, 알루미늄 소재의 번호판이 사고를 확대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미국 뉴욕주 Vehicle and Traffic Law 「자동차교통법」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 시 발급받은 번호판 하나를 후면에 보이기 쉽게 부착하여야 한다(「자동차교통법」 제410조제1항, 제411조제1항).
- 이륜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교통경찰은 직접 운행속도 및 교통규범 위반을 단속하거나, 교통단속 카메라를 활용한다. 세부적으로 스쿨존에서는 시간을 정하여 속도 단속기(photo speed violation monitoring system)를 설치하여 위반현장을 사진 등으로 저장하며, 범칙금을 부과하는 위법 운행사실 공지 시에 이륜자동차의 후면 번호판 사진을 포함한 자료를 제공한다(제1180-B조, 제1180-D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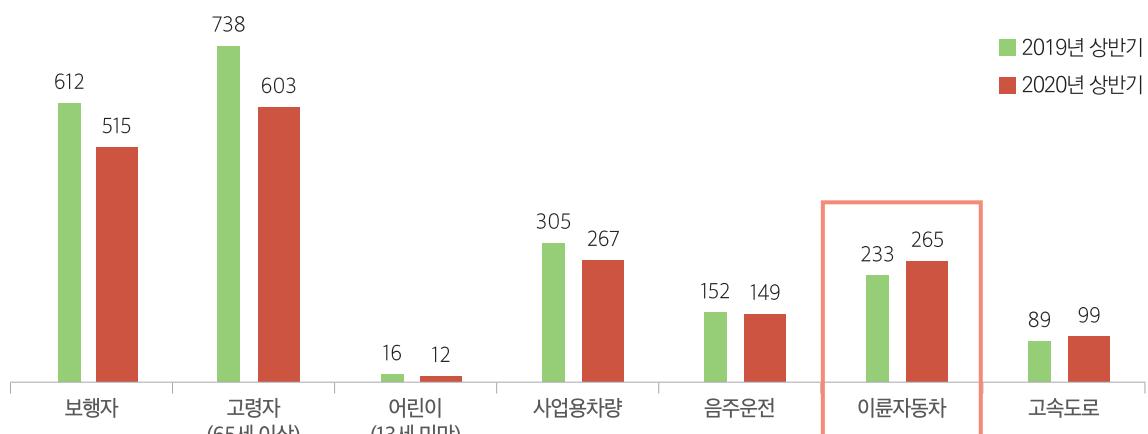
싱가포르 Road Traffic Act 「도로교통법」

- 싱가포르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주무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 이때 발급받은 등록번호와 싱가포르 등록 정보를 포함하는 식별표시를 직사각형의 번호판에 게재하여 이륜자동차 전·후면에 보이기 쉽게 부착하여야 한다.
- 전면에 부착하는 번호판은 지면에서 수직으로 1.5미터 미만의 위치에 앞쪽에서 볼 때 수직으로 보이게 부착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착할 면이 화보되지 않을 때에는 곡선 형태의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정면이 아니더라도 전면 어느 쪽에서든 보이기 쉽게 해당 번호판을 부착한다(「도로교통(이륜자동차·등록·면허)규칙」 제18조제2항).
-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은 도로안전을 위하여 후방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교통단속용 카메라를 채택하고 있다⁶⁾.

6) 싱가포르 교통청에서 채택하고 있는 교통단속 카메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Fixed Speed Camera, Mobile Speed Camera, Police Speed Laser Camera(Lasergun), Red Light Cameras, Average Speed Cameras.

[교통사고 사망자 수 추이]

(단위: 명)



자료 출처: 경찰청 브리핑(2020.8.13.)

국내현황

-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9년 1~6월 233명, 2020년 1~6월 265명으로 동기 대비 13.7%가 증가하였고, 교통사고 건수는 2.7% 증가하였다⁷⁾. 이는 사업차량, 음주운전 등 여타 부문의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가 대체적으로 감소추세인 것에 비해 이륜자동차의 경우는 증가추세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륜자동차 관리를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면, 해당 이륜자동차를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고(「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98조의7), 번호판을 후면 보기 좋은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49조제1항).
- 교통단속 카메라를 자동차 전면에 설치·운행하고 있는 현행 시스템으로는 이륜자동차 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할 수 없어 과속 및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이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7) '20년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동기대비 10.0% 감소, 경찰청 브리핑(2020.8.13.).

미국, 일본 입법례의 원문과 번역문

New York State Vehicle and Traffic Law

Title 4: Registration Of Vehicles

Article 15: Registration Of Motorcycles

S 410. Registration of motorcycles; fees; renewals.

1. Registration by owners. No motorcycles shall be operated or driven upon the public highways of this state without first being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in this chapter.

S 411. Distinctive number; form of number plates.

1. No person shall operate or drive a motorcycle on the public highways of this state unless such motorcycle shall have a distinctive number assigned to it by the commissioner and a number plate issued by the commissioner with a number corresponding to that of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conspicuously displayed on the rear of such motorcycle, securely fastened so as to prevent the same from swinging.

ROAD TRAFFIC ACT

26.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marks

(1) On the issue of a licence under this Part for a vehicle other than a bicycle, it shall be the duty of the Registrar to register the vehicle in the prescribed manner without any further application in that behalf by the person taking out the licence.

(2) Subject to this section, the Registrar shall assign a separate number to every vehicle registered with him and a mark indicating both the registered number of the vehicle and the fact that it has been registered in Singapore shall be fixed on the vehicle or on any other vehicle drawn by the vehicle or on both in the prescribed manner.

뉴욕주 「자동차교통법」

제4장 자동차등록

제15절 이륜자동차 등록

제410조 이륜자동차 등록, 비용, 갱신

① 소유자의 등록. 이 절의 조항에 따라 먼저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뉴욕주 공공도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장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11조 식별번호, 번호판 양식

① 누구든지 위원이 할당한 등록번호 및 위원이 발급한 번호판을 해당 이륜자동차의 뒤쪽에 보기 쉽게 표시하는 것으로서 등록증에 해당하는 번호를 이륜자동차 후면에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지 아니하면, 뉴욕주 공공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거나 운전할 수 없다.

싱가포르 「도로교통법」

제26조(등록 및 식별표식)

① 이 절에서 자전거를 제외한 차량에 대한 면허를 발급하는 때에, 등록기관은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의 추가적인 신청 없이 규정된 방식으로 차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조에 따라, 등록기관은 신청자에게 등록된 차량에 대한 식별번호, 차량의 등록번호와 싱가포르에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표식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표식은 차량 또는 차량에 포함되는 그 밖의 모든 차량 또는 둘 모두에 규정된 방식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5) A person charged under this section with having an obscured mark or with obscuring a mark or rendering or allowing it to become or to remain not easily distinguishable shall not be liable to be convicted on the charge if he proves that he has taken all steps reasonably practicable to prevent the mark being obscured or not easily distinguishable.

⑤ 알아보기 곤란한 표식을 부착하거나 표식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연출 및 이를 허용하거나 쉽게 구별할 수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 이 조에 따라 고발된 사람은 표식을 알아보기 곤란하거나 쉽게 구별할 수 없는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그 고발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Road Traffic (Motor Vehicles, Registration and Licensing) Rules

18. Position of identification mark

(1) Subject to paragraph (2), the identification mark shall be exhibited at the front and at the back of the motor vehicle not more than one metre from the ground in a vertical position so that every letter or figure of the identification mark is vertical and easily distinguishable —

- (a) in the case of letters and figures placed at the front of the motor vehicle, from the front of the motor vehicle; and
- (b) in the case of letters and figures placed at the back of the motor vehicle, from behind the motor vehicle.

(2) In the case of a motor cycle, the identification mark exhibited on a plate fixed on the front of the vehicle shall —

- (a) be exhibited not more than 1.5 metres from the ground (when the motor cycle is unladen) in a vertical position so that every letter or figure of the identification mark is vertical and easily distinguishable from the front of the motor cycle; or

- (b) (...), be fixed so that from whichever side the motor cycle is viewed the letters and figures on one or other face of the plate are easily distinguishable although they may not be distinguishable from the front of the vehicle.

도로교통(자동차·등록·면허) 규칙

18. 식별표식의 위치

① 제2항에 따라, 식별표식은 차량의 앞면과 뒷면에 지면에서 수직으로 1미터 미만의 위치에 표시되어야 하며 식별표식의 모든 문자나 도형은 다음 위치에서 수직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a) 자동차 앞면에 위치한 문자와 도형의 경우 자동차 전면

(b) 자동차 뒷면에 위치한 문자와 도형의 경우 자동차 후면

② 이륜자동차의 경우 차량 전면에 고정된 판에 표시된 식별표식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지면에서 수직으로 1.5미터 미만에 (오토바이에 탄 사람이 없을 때) 위치시켜서 식별표식의 모든 문자 또는 도형이 이륜자동차의 앞쪽에서 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한다.

(b) (...), 차량 전면에서 구별되지 않더라도 이륜자동차의 어느 쪽에서는 판의 한 면 또는 다른 면에 있는 문자와 그림이 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고정한다.

최신 외국입법정보

국회도서관

2020-208 (총 8권 | 2020.01~2020.03)

최신 외국입법정보

발행처: 국회도서관 | 발행인: 한민경 | 저작자: 김민경

소년범죄 관련
독일, 프랑스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0-21 (총 8권 | 2020.04~2020.06)

최신 외국입법정보

발행처: 국회도서관 | 저작자: 한민경 | 저작자: 김민경

바디캠(폴리스캠)
사용에 관한
미국 입법례

국회도서관

2020-22 (총 8권 | 2020.07~2020.09)

최신 외국입법정보

발행처: 국회도서관 | 저작자: 한민경 | 저작자: 김민경

오픈뱅킹 법제화
관련
EU·영국·일본
입법례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은 『최신 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더욱 알찬 내용으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최신 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서비스
<http://law.nanet.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발간등록번호 31-9720107-001703-14

ISSN 2586-6869



국회도서관
NATIONAL ASSEMBLY LIBRARY